

## 2024년 4단계 BK21 사업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관련 FAQ

<BK21사업팀, '24. 4. 8.>

### □ 공고 및 선발

Q1. 해외연수 기간을 1년 이내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해외연수 기간은 1년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등으로 중단 시,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취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 시, 차년도 해당 대학의 선발인원 배분 등에 패널티 부여 가능

Q2. [서식1] 해외연수 지원 신청서 상 작성하는 어학능력 자격시험 취득점수의 경우, 만료된 점수여도 가능한가요?

A2. 만료된 점수여도 기재 가능합니다.

Q3. 지원자격 중, “3개월 이상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한 자”에서 3개월 이상 사업 참여는 ‘박사과정’으로의 참여인가요?

A3. 석사,박사,통합과정 모두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참여하셨으면 됩니다.

Q4.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는 “참여대학원생” 요건을 만족하나, 선정이후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나요?

A4. 신청서 접수 마감일자 기준으로 신청 자격요건을 만족하나, 선정 이후에 참여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해외연수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 연수기간 동안 BK21사업 참여 현황 유지 시, 연구장학금 외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가능

Q5.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 대학 내부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참여대학원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인 자여야 합니다.

Q6. 해외연수지 및 연수기관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6. 해외연수지 및 연수기관에 대해 참여대학원생 및 지도교수와의 논의 후 연수지 및 연수기관을 컨택 및 선정 하시고, 해당 선정 완료 사항을 연수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기관 확정 관련 서류는 대학에서 보관증빙으로 구비해와 주시면 되며, 신청서 접수 이후 연수기관이 변경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 연수기관 변경 시, [서식2]연수계획서 및 [서식9]연수계획 변경신청서를 재단에 전자공문 제출 필요

Q7. 최종선정 이후, '25.2.28까지 출국이 어려울 경우, 출국일 연장이 가능한가요?

A7.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25.2.28.까지 출국하지 못할 경우, 출국일 연장(사업비 이월)이 불가하며,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 출국일을 연수개시일로 함

Q8. 재선정평가로 신규 진입한 교육연구단(팀) 참여학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A8. 재선정평가로 신규 진입한 교육연구단(팀)의 경우, 해당 학과 참여대학원생의 BK21사업 참여기간이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4년 공고에서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 대학자체 선발 평가

Q1. 평가패널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A1. 평가패널에 대한 구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나, 인문/과기 2개의 분야에서 선정 필요한 배분 인원이 있으실 경우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로 패널을 나눠서 운영을 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대학 내 심의결과에 따라 1개의 패널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Q2. 대학 자체 선발의 경우,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로 배정된 선발 배분 인원을 준수해야 하나요?

A2. 인문사회로 배정된 인원의 경우 변경이 불가하나, 과학기술 분야로 배정된 인원은 인문사회로 변경하여 선발 가능합니다.

Q3. 대학 자체 선발일 경우, 대학별 배분 인원 외 교육연구단(팀)별 지원 가능 인원이 정해져있나요?

A3. 교육연구단(팀)별 지원 가능 인원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Q4. 대학 자체 선발의 경우, 배분 인원 외 후보인원 추천이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대학 배분인원 외 선발 후보 인원은 5명까지 추가 추천 가능합니다.

Q5. (별첨2) '국제 공동연수자 대학 선발 평가 가이드'는 대학 자체 평가 시, 필수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인가요?

A5. 네, 맞습니다. 대학 자체 평가 시 제공드린 가이드 내 사항을 준수하시어 평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가이드 위반 시, 해당 대학은 국제 공동연수자 선발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재단 선발 평가

Q1. 재단 선발 대상 대학의 추천 인원은 대학별 제한이 있나요?

A1. 재단 선발 대상 대학의 추천 인원은 대학별 2명 이상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경우, 1명 추천 가능

## □ 사업비 지급 및 결과보고

Q1. 우수대학원생 해외연수 선발 대상자에 대한 지원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A1. 재단에서 대학(주관기관)으로 입금이 되며, 대학 내 관련 부서에서 연수생 개인 계좌로 지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 협약관련 세부 절차는 최종 선발인원 공지 이후 별도 안내 예정

Q2. 항공권의 경우, 일정상의 사유로 학생 또는 대학이 선결제 후 협약액이 입금되면 페이백 처리해도 되나요?

A2. 학생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먼저 선결제 한 후, 협약금액 입금 이후 페이백 또는 계정대체 진행 가능합니다.

Q3. 해외연수비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정산 관련 안내는 추후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Q4. 결과보고 관련 서류(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결과보고서)는 언제 제출 하면 되나요?

A4.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결과보고서는 해당 서류 제출 기한 내, 연수자가 대학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대학에서는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재단으로 전자공문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 기타 사항

Q1. 연수기간 중,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을 방문할 경우, 방문 일자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연수기간 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하며,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국 일시 방문 또는 제 3국 방문시, 대학에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외 공동연구 수행 중 일시 귀국을 할 수 있는 허용일수(귀국허용일수)는 전체 연수기간 1년 중 출국과 입국일을 포함하여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용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불인정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 시 반납해야 함